

피고인 아닌 자의 유죄인정 진술의 증거능력¹⁾

I. 사건개요

길거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2살 아이가 9mm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목격자들은 총을 쏜 사람이 파란색 셔츠나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Ronnell Gilliam이 폭행에 가담하였고 Nicholas Morris가 사건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경찰은 Morris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9mm 권총 카트리지와 3개의 .357 구경 총알을 발견하였다. Gilliam은 경찰에 자수하면서 처음에 Morris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이후 Gilliam의 사촌인 상고인이 총을 쏘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illiam의 진술번복을 신뢰하지 않은 뉴욕주 검찰은 영아살해와 총기소지 죄목으로 Morris를 기소하였다. 검찰은 유죄협상제도(plea deal)을 통해 .357 구경 권총 소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Morris는 이에 합의했다. 사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권총은 .357 구경 권총이 아니었다.

몇 년 뒤 뉴욕주 검찰당국은 사건 직후 Morris의 아파트 수색 당시 확보한 파란색 스웨터에서 나온 DNA와 상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고인을 살인죄로 체포 및 기소하였다. 소송에서 상고인은 검사 측 증언으로부터 Morris의 아파트에서 경찰이 9mm 탄약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이는 Morris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언이었다. 하지만 Morris는 상고인의 공판 당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었다. 검찰 측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357 구경 권총 소지 혐의를 인정하였던 Morris의 유죄인정 진술(plea allocution)²⁾ 기록 일부를 제출하였고, 1심

1) *Hemphill v. New York*, 595 U. S. ____ (2022)(No. 20-637)(2022. 1. 20. 결정).

2) 피고인의 유죄혐의 인정 후 형선고 전에 법원이 유죄협상 결과를 피고인이 이해하고 있는지, 자유의사로 협상에 임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법정진술 또는 피고인의 유죄답변과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이 이뤄지는 절차를 지칭한다.

법원은 해당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Morris의 진술을 인용하며 Morris의 죄목은 살인이 아닌 .357 구경 권총을 소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배심원은 상고인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항소심과 주대법원 모두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상고인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증언적 전문증거(testimonial hearsay)를 채택한 것이 증인대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II.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요지

1. 법정의견

가. 연방문제 관할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인정

본안 판단에 앞서, 주법원에서 연방법 위배 주장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정부 측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은, 심사의 대상이 된 결정을 내린 주법원이 연방법 위배 주장을 판단한 바 있거나 그러한 주장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 아닌 한, 일관되게 연방법 위배 문제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특정한 형식의 문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주법원에 해당 주장을 충분한 정확성을 갖고 적시에 제기하는 한 이와 같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고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 주법원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상고인은 Morris의 유죄인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Crawford 결정에서 확인된 연방헌법 수정 제6조(이하 ‘수정 제6조’) 증인대면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록 한다.

나. 증인대면권의 보장내용과 그 위배 여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 보장내용 중 하나인 수정 제6조 증인대면권 조항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은 Ohio v. Roberts(1980) 결정에서 공판에 설 수 없는 증인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reliability)이 인정되는 한, 즉 확고히 확립된 전문증거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4년 후, 이 법원은 이와 같은 신빙성(reliability)에 기하여 증인대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폐기하였다. Crawford v. Washington 결정에서 이 법원은 증인대면권 조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주된 해악은 형사절차를 민사절차화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조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사전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던 경우 외에 헌법제정자들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수정 제6조의 문언은 증인 대면이라는 요건에 대한 예외를 판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바, 이 법원은 수정 제6조 제정 당시 확립된 예외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정부 측은 상기 원칙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주정부 측 주장의 주된 요지는 Reid 원칙³⁾이 증인대면권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해당 원칙이 단순한 절차법상의 원칙으로 증인대면권의 실질적 범위가 아니라 해당 권리의 행사방법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3) 뉴욕주 판례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증거제출을 개시하는 경우 본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른바 개시원칙(Opening the Door)이라고 불리는 이 법리에 관해 People v. Reid 결정에서 뉴욕주 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연방 수정헌법 제6조의 증인대면권 조항에 의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형태의 전문증거(testimonial hearsay)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의 1심법원은 위 판례에 근거하여 제3자인 Morris의 유죄인정 진술 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수정 제6조가 피고인의 증인대면권 행사를 규율하는 절차상의 원칙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는 주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적시적 이의신청 요건⁴⁾이나 포렌식 증거물 채택에 있어 사전통지 및 요구 원칙규정(notice-and-demand statutes)⁵⁾을 포함한 이의제기를 규율하는 절차상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Reid 원칙은 상기의 절차적 원칙들과는 구별된다. 이는 어떠한 자료가 재판에 관련되고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증거법원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원칙은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일방의 증거와 주장사실이 사건 기록 전체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심증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자료제시를 통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주정부의 주장은 Ohio v. Roberts(1980) 결정의 신빙성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명백히 배척한 Crawford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Crawford 결정의 의의는 적어도 증인대면권 조항의 제정사, 문언,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수단을 신빙성에 대한 법관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인대면권 규정은 증거의 신빙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반대신문이라는 특정한 방식으로 신빙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신빙성이 최선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증인대면권 보장에 있어 법관의 역할은 증언형태의 전문증거의 신빙성이나 신뢰도(reliability or credibility)를 형량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을 심사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적 전문증거를 반대신문을

4)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1심에서 그 증거제출에 대한 이의신청이 충분히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칭함.

5) 검사가 분석 자료 등을 작성자의 법정진술 없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피고인 측에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일 일정한 기한 내에 피고인이 해당 증거활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증인대면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거치지 않은 채 인정함으로써 위 원칙을 위반하였다. 상고인의 진술이 합리적 심증형성을 방해하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위 전문증거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법관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관은 주정부가 제출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유죄진술 증거로 미루어볼 때 Morris가 충격자였다는 상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신뢰성이 없거나 달리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당한 영향력을 치유하기 위해 해당 증거가 합리적으로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도 법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심리판단은 증인대면권 조항에 반한다.

다. 실제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증인대면권 보장

다음으로 주정부는 Reid 원칙이 자의적이고 왜곡된 증거채택을 방지하여 법원의 실제적 진실발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재판의 필수적 기능인 실제적 진실발견을 인정하고 재확인해온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우선하여 이를 고려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허용한 일련의 연방대법원 결정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결정에서는 헌법상 요건의 예외가 문제되지 않았다. 각 결정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예방적 조치의 적정한 범위를 판단하였다. 예컨대, 이 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압수수색 금지 위반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fruits)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그 보장내용의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예방조치를 구별하였다. 예방 차원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실질적인 보장이 아니라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제재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원은 비록

위 법칙이 해당 증거물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법익 형량(balance test)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물을 피고인을 탄핵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대로, 이 법원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불리한 증거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곧바로 증인대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요청의 위배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는 없다. 즉, *New Jersey v. Portash* 결정에서 주정부는 강압에 의한 피고인 진술을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위증죄 방지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보호법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강압에 의한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자기부죄금지 원칙을 규정한 연방헌법 수정 제5조 위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위 결정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보장 내용을 고려할 때 법익 형량은 단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정 제6조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가해질 수 있는 부당한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증언 형태의 전문증거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법관이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이러한 명령을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6조에 규정된 권리들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재판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한 그러한 권리들이 경시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증인대면권 남용 방지의 문제

주정부는 원심을 파기하게 되면 검찰에게 증인대면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연방과 주의 전문증거법칙은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신빙성 없는 법정 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배제한다.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 하더라도, 연방증거법규칙 제403조와 같이 잘 확립된 법칙은 부당한 편견, 쟁점의 혼동, 배심원이 오인할 가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해당 증거의 증거가치보다 큰 경우 재판부가 해당 증거를 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일 해당 증거의 부당하거나 편향된 성질이 명백해지기 전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 법원은 통상 그러한 결정을 철회, 취소하거나 적절히 증거활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원은 판례로 인정되어온 완전성 원칙(rule of completeness)이 증언 형태의 전문증거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제시된 당사자는 그 진술의 나머지를 제시하여 진술을 완성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Morris의 유죄인정 진술이 상고인이 제출한 진술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전성 원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원칙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적 전문증거(testimonial hearsay)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은 다른 쟁점이며, 이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다.

증인대면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당해 법원이 아니라 반대신문을 통하여 검증할 것을 요한다. 재판에 이르게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교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증언적 전문증거(testimonial hearsay)를 채택한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보호내용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2. 대법관 2인의 보충의견⁶⁾

6) 대법관 Alito 및 대법관 Kavanaugh.

Morris의 진술이 증언의 성격(testimonial)을 가진 진술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정 제6조 증인대면권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방대법원의 선례는 일정한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묵시적 포기의 사유는 주법이 정한 절차적 기준에 따라 불리한 증거에 반박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 대면에 대한 요구와 합치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뉴욕주의 증거법 법리가 갖는 문제는 그 적용이 증인대면권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나 그러한 권리 주장과 합치하지 않는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사실확인을 방해하는 증거채택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진술자가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제출이 본래 증인대면권 조항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검찰 측의 증거 활용을 반박할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완전성 원칙은 묵시적 포기 개념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진술자에 의한 진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은 원진술자를 반대신문을 요하지 않는 증인으로 허용하는 의식적이고도 자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원진술자의 진술의 나머지 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른 진술에 대해 원진술자를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다.

유사한 논리가 자기부죄거부특권에도 적용된다. 선례가 명확히 하였듯이, 피고인이 증언석에 서는 순간 스스로 논박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에 대하여 연방헌법 수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반대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수정 제6조의 반대신문권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특정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이의 진술을 피고인이 제출한다면, 이는 피고인 스스로 해당 사실에 대해 진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판단자(trier of fact)가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증언대에 설 수 없는 자의 진술을 제출하는 선택을 하고, 해당 진술자의 나머지 진술이나 동일한 사실에 대한 관련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⁷⁾

상고인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수정 제6조 위배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바, 이 법원은 당해 주법원 결정을 심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이에 나는 법정의견에 정중히 반대한다.

상고인은 Reid 원칙이 수정 제6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상고인 주장은 부적법하다. 28 U.S.C. 1257⁸⁾에 따라 이 법원은, 상고인의 연방법 위배 주장이 심사의 대상이 된 결정을 내린 주법원에서 적법하게 제기되었거나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한 심리·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상고신청을 받아들인 사안에 대해 주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에 대해 침묵한 경우, 해당 쟁점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상고인은 주법원이 당해 연방법 위배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고인은 이 부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뉴욕주 대법원이 수정 제6조 위배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고인은 해당 주장을 충분히 정확하게 명확한 방식으로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주대법원에서

7) 대법관 Thomas.

8) 주최고법원 결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한 규정으로, 주 최고법원의 최종결정이나 명령은 상고신청(certiorari)에 따라 1) 조약이나 연방법률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2) 연방헌법, 조약, 연방법률 위배 여부로 인해 주법률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3) 법적 지위, 권리, 특권, 면책이 연방헌법, 조약, 연방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위원회나 권한행사에 따라 특별히 설정되거나 주장되는 경우 연방대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 위배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인의 증거제출로 인하여 Morris의 증언적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라고 주장하였다. 상고인은 결코 Reid 원칙에 따른 증거채택이 증인대면권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고인은 Reid 원칙이 합헌적이라고 이해하였다. 요컨대,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수정 제6조가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동의하고 있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유일한 쟁점은 사실심이 뉴욕주 증거법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다.

법정의견의 입장처럼 상고인의 증인대면권 조항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Reid 원칙의 합헌성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고인은 이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법정의견이 강조하고 있는 주법원 사건기록에서 제시된 상고인의 주장은, 뉴욕주 법원이 수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매우 포괄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으로, 이 같은 추상적인 진술은 명백히 주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상고인은 뉴욕주 대법원에 수정 제6조 위반 주장을 적법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시킨다. 관할이 부정될 시 유일하게 적법한 구제수단은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III. 결정의 의의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6조에서 형사절차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과 판례를 통해 전문증거법칙과 예외법리가 매우 세밀하게 발전해왔다. 2004년 연방대법원은 Crawford 사건에서 증언적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전문증거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제시하는 측에서 진술자가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고, 진술이 이뤄질 당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 결정은 위 Crawford 사건 법리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유죄협상에 대한 법원의 확인절차에서 행한 진술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이 수정 제6조가 보장하는 증인대면권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정의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법관의 판단으로 반대신문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수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상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헌법상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며, 법관의 역할은 증언적 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보충의견은 피고인이 증인대면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증거제출 행위로 인해 증인대면권의 묵시적 권리 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연방대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반면, 반대의견은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표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 관할권으로 연방하급심 법원의 결정과 더불어 주법원 결정에 대한 최종심사 권한 및 연방법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주법원 결정의 연방법 위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연방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결정을 내린 당해 주법원 사건에서 판단되었거나 적절히 제기되었을 것을 요한다. 법정의견은 상고인이 주법원 재판절차의 각 단계에서 수정 제6조 위반을 주장하였으므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연방문제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방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 주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해당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